

#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98
----------	------

2024년 9월 11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 
나. 제출일 : 2024년 8월 12일  
다. 회부일 : 2024년 8월 14일  
라. 상정일 : 제32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24년 9월 6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구종원 평생교육국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위탁기간이 2024.12.31. 만료 예정에 따라,
-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제1호

-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○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·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가정 밖 청소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○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및 시설 규모

구분	동·호수	전용면적	비 고
대원리츠빌 (시루봉로15길 93)	2동 203호	63.77㎡	사무실
	1동 103호	60.05㎡	여자 생활관
	1동 201호	60.03㎡	
	1동 302호	59.98㎡	
해날하이빌 (도봉로133길 8-18)	301호	57.42㎡	여자 생활관
	302호	50.63㎡	
삼성아트빌 (도당로 17길 54)	301호	44.32㎡	남자 생활관
	302호	44.32㎡	

- 이용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

○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4.12.26. ~ 2027.12.25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○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511백만원('24년)

- 산출근거 : 인건비 336백만원, 운영비 33백만원, 사업비 142백만원

○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,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6조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태한)
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단법인 인터넷꿈희망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 이나 2024년 12월 25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,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(2024.12.26.~2027.12.25)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임.

#### 〈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〉

-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
- 소재지 :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, 도봉구 도당로17길 34, 도봉구 도봉로133길 8-18
- 시설규모 : 연면적 440.52㎡
- 주요시설 : 상담실, 생활실, 학습실, 사무실 등
- 이용대상 : 가정 밖 청소년
- 위탁사무 내용
  -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  - 청소년 상담 및 교육문화사업
  - 청소년 문제예방사업
  -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
  - 쉼터의 시설물, 장비 등 유지관리
  -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활동
  -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
  - 기타 '시'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4.12.26. ~ 2027.12.25.)
-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소요예산 : 511백만원('24년)
-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쉼터·사회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곳이며, 주거시설 정원은 16명으로 자립유지지원(주거·사후관리 긴급지원 등), 야간보호지원(야간보호상담, 야간안전관리 등), 생계지원(생필품 및 먹거리지원)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

**<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생활관 운영 현황 >**

구분	주소	용도	비고
삼성아트빌	도봉구 도당로 17길 54	남자시설	2개실(4명)
해날하이빌	도봉구 도봉로 133길 8-18	여자시설	2개실(4명)
대원리츠빌	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	여자시설	3개실(8명)
		사무실	1개실

- 평생교육국은 자립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 확보 등을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제출하고 있으며, 본 동의안의 위탁 사무는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.
- 다만,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지도·점검 결과 복무관리(출장) 미흡, 수의 계약 지출 처리 미비, 문서관리 적정성 미흡, 물품담당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등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수탁 법인의 투명성과 행정역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**< 최근 3년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지도·점검 지적사항 >**

- 복무관리(출장관리) 미흡
- 회계관리(물품관리 및 계약) 수의계약 지출 처리 미비
- 문서관리 적정성 미흡
- 물품담당 신원보증보험 미가입
- 후원물품대장 미비치
- 복무사항 수기 관리

**<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수탁현황 >**

- 2019. 12. 26. ~ 2022. 12. 25. : 신 규 / (사)인터넷꿈희망터
- 2022. 12. 26. ~ 2024. 12. 25. : 재계약 / (사)인터넷꿈희망터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5. 토론요지 :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#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9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 중인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의 위탁 기간이 2024.12.25. 만료 예정에 따라,

나.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은 가정 밖(위기) 청소년의 생활보호 및 가정·사회복귀,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사업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
- 청소년 상담, 보호기관·단체 연계활동 지원
- 위기 개입 상담, 진로지도,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
- 가정 밖 청소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
-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
- 기타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및 시설 규모

구분	동·호수	전용면적	비 고
대원리츠빌 (시루봉로15길 93)	2동 203호	63.77㎡	여자 생활관
	1동 103호	60.05㎡	
	1동 201호	60.03㎡	
	1동 302호	59.98㎡	
해날하이빌 (도봉로133길 8-18)	301호	57.42㎡	
	302호	50.63㎡	
삼성아트빌 (도당로 17길 54)	301호	44.32㎡	남자 생활관
	302호	44.32㎡	

- 이용대상 :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 장기적인 보호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

마. 민간위탁 기간 : 3년(2024. 12. 26. ~ 2027. 12. 25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511백만원('24년)

- 인건비 336백만원, 운영비 33백만원, 사업비 14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청소년기본법」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-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규리 (☎ 2133-4133)